

2007年 2月

碩士學位論文

青少年 保護觀察의 現況과 改善方案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朴 鍾 哲

青少年 保護觀察의 現況과 改善方案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Juvenile Probationer*

2007 年 2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朴 鍾 哲

青少年 保護觀察의 現況과 改善方案

指導教授 柳 全 哲

이 論文을 碩士學位申請論文으로 提出함.

2006 年 10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朴 鍾 哲

朴鍾哲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印

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印

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印

2006 年 11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目 次

ABSTRACT

제1장 序 論	1
제1절 研究의 目的	1
제2절 研究의 範圍 및 方法	4
제2장 保護觀察制度의 概觀	5
제1절 保護觀察制度의 概念	5
1. 保護觀察의 意義	5
2. 保護觀察制度의 目的과 機能	6
제2절 現行 保護觀察制度	9
1. 保護觀察의 導入과 定着過程	9
2. 保護觀察 對象者 및 期間	11
3. 保護觀察機關	12
제3장 靑少年에 관한 保護觀察과 現況	18
제1절 靑少年에 관한 保護觀察	18
1. 靑少年犯罪와 事件處理節次	18
2. 靑少年 保護觀察對象者의 分類體系	26
제2절 少年에 대한 保護觀察 現況	32
1. 保護觀察處分別 對象者	32
2. 處分類型別 少年對象者 事件 現況	34
3. 少年對象者의 性別 現況	36

4. 少年對象者の 罪名別 現況	36
5. 少年對象者の 職業別 現況	38
6. 保護觀察 期間 中 再犯者 現況	39
제4장 少年保護觀察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41
제1절 少年保護觀察制度의 問題點	41
1. 保護觀察對象者の 年齡	41
2. 保護觀察 擔當 人力의 不足 및 專門性의 缺如	42
3. 少年保護觀察對象者の 分類體系	43
4. 判決前調査(保護觀察의 開始 前 活動) 및 實行에 관한 問題	44
5. 운영프로그램에 관한 問題	45
제2절 少年保護觀察制度의 改善方案	47
1. 少年 保護處分의 不合理性에 대한 改善方案	47
2. 保護觀察機構 및 擔當人力問題에 대한 改善方案	48
3. 少年保護觀察對象者の 分類體系의 改善方案	49
4. 判決前調査에 대한 改善方案	50
5. 운영프로그램 問題에 대한 改善方案	52
제5장 結 論	60
參考文獻	65

表目次

<표 1-1>	소년사건의 접수 및 소년사건비율 변화추이	33
<표 1-2>	소년대상자에 대한 처분내용별 실시사건	35
<표 1-3>	소년대상자의 성별 구성 및 변화추이	36
<표 1-4>	죄명별 접수사건 현황 및 연도별 추이	37
<표 1-5>	소년대상자의 직업별 현황	38
<표 1-6>	소년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률 현황	39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Juvenile Probationer

Park, Jong-Chel

Advisor : Prof. Ryu, Chen-Chel, Ph. 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s young people are our future and their behaviors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our society, juvenile delinquencies should not be neglected to prevent them from being criminals, possibility of habitual crimes should be prevented completely and their delinquencies should be discriminated from adult crimes.

In the past, our society preferred to have facilities for delinquent juvenile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but these days, they are helped to have normal life in their community after they get through a certain period of custody. Therefore, we have to make a deliberate consideration in treatment of juvenile crimes and prevention of second offense to help young criminals have ability to adapt to their community and cooperate with it and become its healthy members.

This study speculates probation system for juvenile delinquencies based on the problems above to present standards to decide what should be done and how for their return to their community.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studies on probation system, it identifies general problems and prepares effective improvement

programs, which will match with basic intents of the current probation system and contribute to its further development.

For the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emphasize seriousness of juvenile delinquencies and recognize it as more than a simple crime. Based on thorough examination of the concept, purpose and function of probation system, this study presents its problems and improvement programs.

The current probation system has many new systems tested and diversified facilities and programs needed for its management. It is believed that the introduction of treatment in community opens a new door to the treatment of criminals though it still has many problems. Specifically, there are few human resources who are engaged in treatment in community and independency of organization of the probation institutes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Such basic problems are obstacles to implementation of other institutions. In addition, there are many side-effects in introduction of advanced techniques as they are not matched with our reality.

Though it has many problems, the probation system is recognized to induce attention and cooperation from community in prevention of second offense and treatment of delinquencies as well as decrease many evil practices of treatment in community and expenses, and prevent delinquent juveniles from being branded as criminals. If the probation system which has many advantages is actively used for treatment of criminal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confirming return of delinquent juveniles to their community.

제1장 序 論

제1절 研究의 目的

청소년 일탈행위와 비행사건의 사례를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속에서 청소년을 방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은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을 비롯하여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실상을 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최근의 신문¹⁾을 보면 10대 고등학생 폭주족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순찰차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벽돌로 순찰차의 문을 내리치고 도주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은 집단폭력조직의 주도권 다툼이 끝나면, 돌연 어른을 상대로 한 살인·강도를 저지른다. 또 길 가는 여고생에 대한 집단 성폭행도 예사로 한다. 부탄가스나 대마초에도 손을 대기 시작, 헤어날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깊숙이 떨어진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행위는 설령 그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가정교육의 부재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한도를 넘어선지 오래된 상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행위의 악질화, 집단화, 누범소년의 증가, 범죄연령의 연소화, 학생소년에 의한 범죄의 증가, 중류층 소년들의 증가 및 청소년범죄의 광역화 현상²⁾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양상은 사회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찾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범죄의 발생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여러 요인이 잠재해 있고, 우연한 기회에 범죄가 발생되어지는 어떤 유발요인에 있어서 불확실하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잠재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³⁾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정신적 불균형이 초래되고 가치관의 미정립과 정서불안으로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연령층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 과정상으로 그들의 내적 세계나 그것이 외부로 나타나는 생활장면에

1) 한국일보, 2006. 11. 09

2) 지광준, 「청소년범죄와 비행」, 삼신각, 1993, 16면

3) Sykes, G., Criminology,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New York : 1978, p.236. ; 지광준, 상계서, 17면 재인용

서의 행동정후 상으로 혼란과 불안정성이 생긴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이전의 발달 단계와 다른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는 청소년들이 비행에 취약하게끔 만드는 정형화된 요인들이 내재해 있다.⁴⁾

청소년은 곧 국가의 미래이며 그들의 행동이 미래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소년 비행을 방치해서 범죄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사전에 억제하고, 낙인으로 인해 미래의 상습범·누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 비행을 일반 성인 범죄와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과거에 우리 사회는 비행청소년을 처우 하는데 주로 교정시설 내에 수용하는 시설 내 처우를 선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일정기간 수용을 거친 후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 생활을 하면서 사회복귀를 꾀하는 사회 내 처우 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그 지역에 복귀할 소년범을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수용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재범방지 노력과 소년범처우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이다. 즉,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에 대한 처우를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발전방향면에서 보더라도 보호관찰은 자유형의 대안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이다.⁵⁾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시행된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로써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사법제도이다. 1989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보호관찰제도는 17년이 경과하면서 괄목할 만큼 많은 성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형사정책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한 이후 2004년 12월 31일까지 총495,975명의 소년범에 대하여 지도·감독한 결과 재범률이 10%정도에 불과하여 그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행함으로써, 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내실 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⁶⁾

현재 정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청소년 정책은 2005년 5월 청소년위원회

4) 이성철,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4. 1면.

5) 김일수, “보호관찰의 발전방향”, 「보호관찰」 제4호, 2004, 12면.

6)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2005.

발족과 더불어 새롭게 수립된 ‘통합적 청소년 정책의 비전’에 토대를 두고 위기청소년 보호시설의 체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위기(가능)청소년 치료·재활을 위한 「국립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하고 전문가 양성과 관련법·제도 정비방안 등을 추천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그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법·제도적 연구를 통하여 일반적 사항의 검토를 결과로 문제점을 찾아 제시하고, 또한 개선방안과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현행 소년보호관찰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맞는 학문적 기여를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研究의 範圍 및 方法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면서,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내제되어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호관찰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이들을 단순히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점을 재인식하과 하였으며, 제2장은 보호관찰제도의 개관으로서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보호관찰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개관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소년에 관한 보호관찰과 현황으로서 소년범죄와 사건처리절차, 소년법상 보호관찰,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체계 등을 살펴보아 입법·정책적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소년보호관찰제도의 기본적인 변화와 입장을 고찰하였다.

제4장은 본 논문의 핵심으로써 소년보호관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으로 연령, 담당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결여, 분류체계, 판결전조사 및 실행,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5장은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보호관찰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도 적용되고 있고, 그 근거법률도 다양하지만, 본 논문은 그 대상자를 청소년에 한정하고 그 근거법률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외에서 출판된 보호관찰제도 및 소년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서적과 논문, 관계기관이 발행한 각종 연구 보고서 및 백서, 세미나 자료집, 시사 간행물·신문 등을 활용한 문헌 연구 방법과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소년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판례를 연구 검토하여 서술적인 방법으로 이론을 종합하였고, 국내형사사법기관의 통계자료를 분석 고찰하였다.

제2장 保護觀察制度의 概觀

제1절 保護觀察制度의 概念

1. 保護觀察의 意義

보호관찰제도(Probation bewährungshilfe, Parole)⁷⁾는 사회내 처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써,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교도소 또는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선행의 유지를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해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지정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통하여 개선·교육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아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사회내 처우를 말한다.⁸⁾

사회내 처우는 교정시설내의 처우에 비하여 여러 장점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원만한 사회복귀라는 행형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제재(sanction) 내지 형벌의 일종으로 이해하여, 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며 또한 피해자에 대해 배상(reparation)을 행할 것을 내용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⁹⁾

7) 오늘날의 보호관찰제도의 직접적인 기원은 John Howrd의 감옥개량운동, Richard Wistar의 죄인들에 대한 음식제공과 억압된 죄인들의 고통감면을 위한 사회운동, 그리고 1841년 J. Augustus 보석 보증인으로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후보호와 직업재활에 공헌한 노력으로 최초의 보호관찰관이라는 명예를 얻은 선각자들의 자기희생에 의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Howard Abadinsky, 문선화, 김영호, 이경남, 장수환 역, 「보호관찰제도와 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 역자서문.

8) 이태언·신석환, 「신보호관찰론」, 학현사, 2005, 15면; 정주영, 「보호관찰법론」, 해양문화사, 2000, 3-11면; 이재상, 「사회보호법론」, 경문사, 1981, 165-167면; 박상기 외,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40면; 진계호,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 제3권,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3, 면; 장규원, “보호관찰의 이념과 모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3호, 1997, 171-172면.

보호관찰은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발전한 형의 유예부 보호관찰제도(Probation)와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발전한 가석방부 보호관찰제도(Parole)의 2가지 형태가 있으나, 양자를 통합하여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다.¹⁰⁾ 즉,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보호관찰의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지도·감독과 보호의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즉 지도·감독은 대상자로 하여금 그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 보호관찰이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항상 그의 행동과 환경을 관찰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를 살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지시와 통제를 가하여 대상자가 조건을 잘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보호는 감독과는 달리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비권력적이며 복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2. 保護觀察制度의 目的과 機能

가. 保護觀察制度의 目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등 체계적인 사회내 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들이 비범죄자들과 보다 쉽게 통합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범죄자들은 쉽게 직업을 가질 수도 있으며,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위하여 생계를 꾸려 갈 수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 관념을 비롯하여 만약에 구금되었더라면 얻지 못할 수 있는 행위들을 발달시킨다. 또한, 사소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교정시설이라고 하는 범죄유전적 환경(criminogenic environment)으로부터 보호한다. 교정시설은 수용자들이 사회복귀 되는 곳이라기보다는 효과적인 범죄기술을 습득하는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보호관찰은 죄를 범한 범죄자라는 낙인의 오명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9) Lynn Zeller Barelay, Social Services in Probation under a Justice as Fairness Model Change A Juvenile Justice Quarterly, Sept., 1983, pp.120-124.

10) 이태언·신석환, 전계서, 15면.

몇몇 권위자들은 일단 비행자 또는 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 사람은 연속된 범행을 저지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지역사회로 재통합시키고 준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라는 문제를 해소하는 실용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 保護觀察제도의 機能¹¹⁾

(1) 犯罪統計(Crime Control)

이것은 보호관찰대상자를 감독하고 이들의 행위를 감시하는 보호관찰이 목표이자 기능이다. 범죄자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독을 통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재범을 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보호관찰은 감독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범죄의 예방을 추구한다.

(2) 社會再統合(Community Reintegration)

범죄자를 그들의 지역사회에 두는 것은 범죄자들이 직업을 찾고 이를 수행하며, 그들의 피부양자를 조력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들은 자신의 감독비용의 일부를 갚거나, 피해자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사회봉사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직업·교육 및 카운슬링 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참가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들은 준법적인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자신이 다양한 결점을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은 보호관찰관의 밀착적인 감시·감독으로부터 종속되어 있지만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3) 處罰(Punishment)

세 번째 기능은 처벌이다. 보호관찰대상자들은 항시 영장 없는 수색 및 체포에 종속

11) Dean J. Champion, "Professor of Criminal Justice Department of Social Science", Texas A&M International University, 「보호」, 법무부보호국, 통권13호, 2001, 117면.

되어 있다. 그들은 엄격한 보호관찰 프로그램 요건과 조건에 충실해야 한다.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이 같은 요건 또는 조건을 따르는데 있어서의 실패는 자신의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¹²⁾

(4) 社會復歸(Rehabilitation)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범죄자들은 자신을 개선하거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들은 자신의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원호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받거나 새로운 직업으로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

(5) 制止(Deterrence)

보호관찰관들은 대상자들의 행동을 감시한다. 그들은 범죄자들의 마약 EH는 알코올과 같은 금지된 물질을 그만두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불시에 마약 또는 알코올 체크를 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개별 또는 집단요법, 혹은 카운슬링과 같이 요구되어지는 서비스에 범죄자들이 참여하는지를 감독할 수 있다. 이 같은 활동들의 일부 또는 전부에 있어서 범죄자들의 개선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대상자의 범죄를 체크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12) 이성철, “가퇴원전 보호관찰 집행 및 처우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03-106면.

제2절 現行 保護觀察制度

1. 保護觀察의 導入과 定着過程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3년의 소년법개정(제30조 1항 6호)을 통해서였다. 1958년 7월 24일 제정된 소년법에는 보호처분으로서 보호자등에의 위탁처분(1호 처분), 소년보호단체 등에의 위탁처분(2호 처분), 병원·요양소위탁처분(3호 처분), 감화원 송치처분(4호 처분), 소년원송치처분(5호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보호관찰처분이 1963년의 개정소년법 제30조 1항 6호에 추가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보호관찰처분은 1호 내지 4호의 처분과 병합할 수 있고(제30조 2항), 소년부가 보호관찰처분을 한 때에는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소년과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해야 하였다(제30조 3항). 그러나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그 내용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조사관의 관찰보고에 관한 규정을 활용하여 보호관찰처분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보호관찰소와 같이 보호관찰처분을 집행할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보호관찰처분은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¹³⁾

그러나 1982년 12월 31일에는 소년심판규칙이 제정되어 보호관찰처분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소년보호관찰은 소년부 판사가 보호관찰처분을 한 후 3 내지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관이 대상소년을 매월 1회 소환하여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일기검사를 한 후에 판사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다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지방검찰청 관내에서 일부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실시를 기반으로, 1988년 12월 31일 소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소년범죄자와 소년비행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처분이 도입되어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 실시를 위한 절차 등의 일반적인 기준을 위한 「보호관찰법」을 제정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법상의 보호소년과 사회보호법상의 가출소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법은 주로 소년법상 보호관찰 또는 단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년, 소년원 가퇴원자, 소년교도소로부터

13) 오영근,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호」 제14호, 2002, 1면.

가석방된 소년 수형자 등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하게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주로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 보호관찰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외에 성인범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다. 즉 보안관찰법(구 사회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국사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의 성격을 가진 보안관찰처분과 상습누범자에 대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이 대표적인 예이며, 1994년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함) 제16조에 성폭력범죄인에 대해 형을 유예할 경우 성인에 대해서는 임의적 보호관찰을, 소년에 대해서는 필요적 보호관찰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시행되었다. 성인범죄인 전반에 대해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5년 형법의 개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였다.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성인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었다. 1997년 12월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3호와 4호에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판사의 결정으로 처분할 수 있게끔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해 형벌대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성격이 같은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보호관찰처분을 규정하였다.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사회내처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봉사 명령제도와 수강명령제도도 같이 시행되었다.

또한 2000년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도 보호관찰을 실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3월 2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 법 제12조는 성매매한자를 보호처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호관찰의 실시영역은 형법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보호관찰기관, 보호관찰의 실시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보호관찰법은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모든 종류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그리고 갱생보호에 관한 통일적 절차법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¹⁴⁾

14) 유숙영, 보호관찰제도의 시행현황과 활성화방안, 교정연구(제26호), 2005, 107면.

2. 保護觀察 對象者 및 期間

현행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형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이며, 이 경우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다(제1호).

(2) 형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보호관찰기간은 그 유예기간이지만 법원이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2호).

이 경우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모든 소년이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년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로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3) 형법 제73조의 2 또는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제3호)로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과할 수 없다. 그리고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가퇴원된 자이고, 보호관찰기간은 퇴원일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이다(제3호).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무기형에는 5년, 15년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 3분의 1을 경과하면(소년법 제65조),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할심사위원회에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년원장이 보호관찰 조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보호관찰 조사위원회에서는 소년원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호소년의 인격, 교정성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가퇴원을 실시한다.

(4)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 즉, 소년부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로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과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는 자는 그 법률에서 정한기간 보호관찰을 받는다(제5호).

또한 이 법의 운영을 함에 있어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대상자의 연령·경력·심신상태·가정환경·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정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조).

3. 保護觀察機關

보호관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¹⁵⁾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조는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두게 하였으며,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⁶⁾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두며, 그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안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보호관찰소 직제를 중심으로 논하기로 하겠다.

가. 保護觀察審査委員會

(1) 保護觀察 審査委員會의 機能과 構成

심사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조).

가.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15) 이태언, 신석환, 전개서, 107면.

16)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직제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89년 5월 26일에 대통령령 제12조 714호로 공포되었는데, 전문 8조와 부칙 2개로 구성되어 있다.

나. 가퇴원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다. 보호관찰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라.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마. 가석방중인 자의 부정기형 종료에 관한 사항

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

사.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가 소집되는 회의시에는 회의의 전·말의 회의록에 작성하여 이를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이외에 회의 소집의 시기, 방법, 의결방법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게 되어 있다. 위원장은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인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검사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다(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제7조). 위원회의 업무는 상임위원 등에 의해 기초되어서 전체 위원회에 회부되어 확정되어지고, 또 확정된 내용은 상임위원 등에 의해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이들 상임위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에 개정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나. 대학에서 형사정책학·행형학·범죄학·사회사업학·교육학·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다.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5년이상 재직한 자

라. 4급이상의 교정직·보도직·보호관찰직·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재직한 자

마. 한국更生보호공단의 3급 이상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또한 심사위원회의 4급 상당 상임위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대학에서 형사정책학·형행학·범죄학·사회사업학·교육학·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다.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교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라. 5급의 교정직·보도직·보호관찰직·검찰사무직·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자

마. 한국更生보호공단의 4급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保護觀察 審査委員會의 權限과 審査

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법 제48조제1항, 법 제50조제1항, 법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수용하는 수용기관의 장 또는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들 수용소의 장은 수용기간 공안 대상자들의 수용태도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참고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소년원장으로부터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소년법 제65조에 의해 무기형의 경우는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는 단기의 3분의1이 경과된 때나 보호소년이 수용된 지 6개월이 경과한 때는 소년원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는데 이 때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의 장은 해당 소년의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때 환경조사나 환경개선활동 등의 결과를 연구하여 가석방·가

퇴원의 신청을 하는데, 심사위원회는 이 신청에 의해 심사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여부를 심사할 때 본인의 인격, 교정성격, 직업, 생활태도, 가족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뿐 아니라(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사안 조사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의해 가퇴원, 가석방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나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허가해야 하며(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심사위원회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가석방이나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때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지를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시기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가. 누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

나. 자립·갱생의 의욕이 인정될 것

다.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라. 사회의 감정이 가석방 또는 가퇴원을 용인한다고 인정될 것

또한 심사위원회는 법 제52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가해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제53조 1항에 의한 가석방·가퇴원된 자의 소재 불명이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인이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정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제53조 5항) 이 경우에 하는 보호관찰의 정지나 해제는 대상자의 소재 불명으로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의 장은 심사위원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여 보호관찰을 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가 보호관찰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법 제48조 1항)

그리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는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 및 보호소년에 대한 기간 경과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통보할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심사위원회의 관할사항은 종래 교도소와 소년원 내에 설치된 가석방, 가퇴원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대동소이한데 과거와 같이 교도소와 소년원 내에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수용자들에 대한 신변사항을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기능을 그대로 살리는 게 좋다는 견해도 있다.¹⁷⁾

나. 保護觀察所

(1) 保護觀察所의 設置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보호관찰소를 둔다(법 제14조 1항). 또 보호관찰소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안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법 제14조 2항).

(2) 保護觀察所의 事務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법 제15조)

가.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수감명령의 집행

나. 갱생보호의 실시

다.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

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마. 범죄예방활동

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

17) 이재신, “보호관찰의 대상자와 기구에 관한 연구”, 「청소년범죄연구」 제6집, 법무부, 1988, 43면.

다. 保護觀察官

(1) 保護觀察官의 意義와 機能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 Rewährungshelfer)의 능력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된다.¹⁸⁾ 그러므로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행형학·범죄학·사회사업학·교육학·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자질에 있어서도 정신질환자이나, 정신신경분야, 심리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지도·교육에 관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각국이 보호관찰관을 선임함에 있어 전문직 공무원으로 특정한 자질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최저 자격요건으로 사회사업학과의 대학원 출신이거나 적어도 행정학과 계통의 대학을 나온 자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인내력과 이해력을 갖춘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¹⁹⁾ 일본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상급시험 합격자로서 6월 이상 1년간 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임명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소나 지소에 소속하여 보호관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에는 보호관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민간인 독지가나 보호위원을 위촉하여 활용하였으나, 이들은 단순히 보호관찰을 보조하는데 불과하였으며 2004·2005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보호관찰관 중심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소의 기본적인 업무에 속하는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의 실시,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범죄예방활동,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 등 보호관찰소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8) 이태언, 신석환, 전게서, 125면.

19) 민건식, “각국 보호관찰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해외파견검사연구논문집」 제3집, 법무부, 1981, 70면 재인용.

제3장 靑少年에 관한 保護觀察과 現況

제1절 靑少年에 관한 保護觀察

1. 靑少年犯罪와 事件處理節次

가. 靑少年犯罪者와 保護觀察

(1) 靑少年犯罪者

우리나라 소년법 제2조에서는 소년범죄에 해당하는 소년을 20세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9조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가리킨다. 즉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연령층이 형법상 청소년에 해당되며 이들이 행한 범죄행위가 ‘소년범죄’이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에서는 형벌법령이 위반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이라고 규정하여 같은 행위를 했을지라도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소년과 구별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으면서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우범소년’의 경우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연령이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우범소년의 경우에도 형벌법령에 해당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지칭하는 말이다.

청소년이란 일반적으로 만19세 미만의 연령을 말하고²⁰⁾,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 최근 청소년보호법 개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매우 상대적이다. 여러 논란 끝에 19세 미만으로 규정되기는 했으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없고, 아직도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호, 감독과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비행이 성인 범죄가 되기 전에, 청소년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 건설하게 있도록 하는 점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범죄는 성인들을 상대로 한 형사법원보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비록 처벌을 받는다 해도 소년비행자라 하지 소년 범죄자라고 하지는 않으며, 소년법원에서 비행소년으로 인정하여 시설처분을 한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일시 비행을 바로잡고,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보호, 치료하는데 주목적이 주어지는 것이지 사회에서 격리하여 죄의 책임을 묻는데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

(2) 靑少年에 대한 保護觀察

보호관찰제도는 죄질이 경미한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기간 보호관찰관 및 범죄예방위원의 지도·감독 하에 교화·선도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원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와 함께 부하여지는 보호관찰(보호관찰부 형의 선고, 집행유예)과 교도소나 소년원 등 교정시설로 부더의 가석방이나 가퇴원에 부수하는 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보호관찰부 가석방)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관찰은 소년에 대한 독립된 보호처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소년법은 단기보호관찰과 보호관찰이라는 2종의 보호관찰을 인정하고 있다.²¹⁾

또한 보호관찰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본다면, 좁은 의미에서의 보호관찰은 이러한 범죄자나 비행소년들에 대하여 실시되는 지도 감독 및 원호를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가르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및 이에 부수되거나 결합된 처분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등과 같은 보호관찰과 관련을 맺고 발전해온 모든 사회 내

21) 이재상, 사회보호법론, 1981, 168-167면.

처우 등이 포함된다고 하겠다.²²⁾

(3) 靑少年에 대한 保護觀察의 法的根據와 期間

① 宣告猶豫

형법범의 경우에는 형사법원에서 소년에 대하여 형법 59조의 규정에 의거 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함에 있어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게 되며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특별법범은 형사법원에서 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함에 있어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기간은 역시 1년이다.

② 執行猶豫

형법범인 경우는 형사법원에서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게 되며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다. 반면에 특별법범인 경우 형사법원에서 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필요시에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 된다.

③ 少年法上 保護處分

보호처분 2호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 대한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병립처분한 단기보호관찰로써 보호관찰기간은 6월이다. 보호처분 3호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 대한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동시에 병합처분한 장기보호관찰로써 보호관찰기간은 2년이며 소년법 제33조 제3항

22) 정동기, 사회복지사명령제도의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9-10면.

에 의해 결정으로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假釋放

교도소의 장이 소년법 제65조 6의 기간을 경과한 소년수형자 가운데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가석방 심사를 신청한 자 중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을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보호관찰기간은 잔형기간이다.²³⁾

⑤ 假退院

소년원의 장이 소년원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을 신청한 자 가운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퇴원을 결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보호관찰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안의 범위 안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이 된다.

⑥ 假出所

보호감호소장 및 치료감호소장이 사회보호법 제10조 제1호 각호에 의해 피보호감호자가 가출소한 때 또는 병과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잔형기가 경과된 때와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친족에게 위탁된 때 피보호관찰대상자 중 2년이 경과하고 특히 개선의 정이 현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사회보호위원회에 가출소자를 신청하여 사회보호위원회에서 가출소를 결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실시하며 그 기간은 3년이다.

23) 배임호, 소년보호관찰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제6호), 1996, 247면.

⑦ 기타

이 밖에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있다. 이는 검찰청의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제3호 규정에 의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보호관찰관에게 선도를 위탁하여 법무부 훈령 제2332호에 의해 소년범의 경우 약물사범 등 집단적 치료 또는 교육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1급 기소유예자에 대해서는 1년, 재범가능성이 낮은 2급 기소유예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기간이다.

나. 少年事件 處理節次

(1) 少年部送致 對象

죄를 범한 20세미만의 소년이 주 대상이다. 촉범소년과 우범소년이 있으나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소년법에는 처분을 과할 때 범행 시 14세 이상이라도 16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과하여야지 형사처분을 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같은 것은 없다. 일본도 소년법을 개정하여 일부 극소수이지만 흉악범 소년범에 대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배려를 포기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대체로 18세를 기준으로 소년법에 의한 소년부 송치와 일반 성인범에 부과되는 형벌의 분기점으로 삼고 있다.²⁴⁾

소년법에서 20세미만의 자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그 밖의 소년에 대하여 촉범소년을 제외하고는 일체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점과, 현행 학제로 보아 18세부터 20세야말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또는 대학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 소년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연령에 있는 자들을 일반교도소에 수용하게 되면 그 낙인의²⁵⁾ 역기능은 엄청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18세-20세의 소년들은 처벌 후 보

2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 소년·비송」, 참조.

25) 사회구성원이 일탈행동이라고 규정한 행동을 어떤 사람이 행한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일탈행위자로 낙인찍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탈행동을 더 저지르게 된다고 보는 견해, 또한 구성원들이 일탈행위자였던 사람의 경력을 들추어내면서 앞으로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면서 스스로도 일탈행위자라는 낙인을 당연시하게 되어 일탈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호자나 사회와 통합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사회에 던져지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처벌 또는 처분 후 상당한 완충기간이 필요한 연령이 바로 그 연령이라고 하겠다.

(2) 處理節次

소년사건에 관한 처리는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관여하고 있으며, 주로 경찰·검찰·법원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각각 고유한 업무기능을 가지면서도 서로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년사건에 관한 처리는 형사사건처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과 비행소년의 선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이 그것이다. 특히 보호처분은 검찰기소에 의한 형사법원의 판결로 형이 선고되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년사건의 이원적 처리는 소년을 가급적 형사사법의 낙인을 찍지 않고 선도·보호하여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경찰·검찰·법원의 소년사건처리 절차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① 警察에서의 少年事件處理

소년비행통제에 있어서 경찰의 주된 역할을 소년비행의 예방과 선도를 위한 제반활동에 비롯하여, 비행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이며, 가정·학교·종교단체 및 기타 사회복지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비행예방·선도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의 위와 같은 기능은 재량권내에서 가능한 것이라 소년비행통제과정에서 이 재량권의 범위 및 한계가 문제시 된다.

경찰의 소년비행통제에 관련된 문제점은 첫째로 소년경찰의 전문성 결여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소년경찰은 대도시 경찰서를 중심으로 일부 조직되어 있으나, 소년범죄 수사도 1986년의 방침과는²⁶⁾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수사과에서 성인범죄와 동

26) 도시에서의 소년범죄 증가로 1986년 7월 1일부터 전국6대도시 경찰서에 소년범죄전담반을 설치하고 3-4명 정도의 수사전담형사를 배속, 소년범죄수사를 전담하게 하였다.

일시 취급되고 있는 형편이며 소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소년경찰에 의해 소년범죄사건이 수사되는 것이 아니고 순환보직에 의해 그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사실상 형식적인 전문화에 그치고 있다고 본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건송치주의와 소년경찰의 재량처분에 관한 것이다. 소년법에 의하면 범죄소년은 물론이고 우범소년과 촉범소년을 포함한 모든 소년사건을 검찰과 법원에 송하도록 되어 있다. 즉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수사보조자인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의 주체인 검사에게 송치하여, 기소편의주의와 검사선의 주의에 의해 처리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고, 촉범소년과 우범소년은 소년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소년부 송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경찰이 재량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소년경찰직무규칙」, 「범죄수사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과 같은 경찰청예규나 행정자치부령에만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전건송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상위법인 「소년법」에 상치된다.

따라서 경찰의 자유재량처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의 전건송치규정을 수정하여, 비행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송치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며, 즉심회부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는 실무관행을 시정하고, 또한 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재량권행사의 대상에 관한 상세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경찰 자유재량의 정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檢察에서의 少年事件處理

검찰이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기소유예, 구약식, 선도조건부기소유예,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 송치,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등이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로서의 지위와 국가소추권을 독점·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하여 범죄소년에 대한 처분권한을 갖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소년에 대하여 수사한 후 형사법원에 기소하거나, 수사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사건으로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9조 1항).

검찰은 소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1명의 소년사건전담 검

사를 두어 소년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소년전담검사라 하여도 소년사건만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년사건 이외 다른 사건도 함께 처리하는 현재로서는 소년경찰이나 소년부판사와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다 하겠다.

소년전담검사가 다른 검사와 비교해서 보면 소년범죄사건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시행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과 선도유예소년의 관리, 소년범죄유발 사범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전부인 상황이며, 우리 「소년법」은 비행소년사건을 검사가 먼저 송치 받아 검토한 후 소년법원에 송치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檢事先議主義를 채택하고 있다(소년법 제49조 1항).

그러나 이러한 검사선의주의를 그대로 고수하게 되면 절차선택의 변화 없이 처분의 종류가 결정되게 됨으로써 행정기관에 의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 된다. 따라서 법원에 의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관해 우리 「소년법」은 소년법원의 검찰송치(송검처분, 소년법 제49조 2항)와 형사법원의 소년부송치에 관한 규정(동법 제50조)을 둬으로써 검사의 선의권 행사에 대하여 이차적 사법통제를 하고 있다 보여 지며, 소년법상 검사선의주의는 검사의 선의권과 법원의 사후적 통제수단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③ 法院에서의 少年事件處理

우리 법제상으로 소년법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을 말한다. 현재 소년법원을 두고 있는 곳은 서울가정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이고 그 외에는 본원 소년부에서 다른 사건과 함께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와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뿐이다.

현행 「소년법」상의 법원의 비행소년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소년부판사는 소년사건을 검사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받거나,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시설의 장으로부터 통고를 받으면 소년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내용과 소년 및 보호자 기타 참고인 등을 조사하도록 명하고, 이에 따라 소년조사관이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소년부판사에게 보고하면 소년부판사는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먼저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한 결과는 어떠한 보호처분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처분결정’을 하여 이

로써 사건은 종결되나,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처분의 내용을 결정하며, 형사처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송검하여 「소년법」의 규정 제48조 내지 58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소년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동법 제43조 1, 2항),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7조).

그러나 소년사건만을 전담하는 판사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소년경찰이나 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환보직에 의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전문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을 담당·처리하는 법관과 조사관의 수도 현저히 부족하여 형식적인 처리에 급급한 상황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靑少年 保護觀察對象者의 分類體系

가. 分類評價制度의 意義

범죄자의 분류평가의 개념과 목적에 관해 미국교정학회(American Prison Association)는 첫째, 철저한 사회조사과 의학적, 정신의학적 그리고 심리학적인 평가와 교육적, 직업적, 종교적인 조사와 같은 모든 가능한 기술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로,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다양한 처우 및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의사결정에 따라 이들 프로그램을 실시·운용하는 것이며, 셋째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자가 개선되어 가는 상황을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분류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²⁷⁾ 그러므로 분류의 목적은 대상자의 범죄위험욕구에 의거하여 시설의 모든 조건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효과적인 처우의 운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범법자의 분류란 단순한 횡적 배열인 유형구분이 아니라, 처우의

27) 이태언, 신석환, 전개서, 2005.

개별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분류처우와 연관되는 동태적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분류는 그 목적에 따라 주관적이거나 적극적인, 그리고 수단으로서 동적인 기준에 의한 분류등급이고 개개인에게 그 욕구와 능력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처우를 지향하는 것이라 정의될 것이다.

영국의 내무부(Home Office)는 범법자에 대한 평가분류 및 처우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법자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개별화의 원칙이 유지될 것을 강조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 세부시행 기준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²⁸⁾

① 위험성 분류(risk classification) : 일반 대상자에 비해서 고위험군이나 중간위험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intensive)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상자 위험성 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무분별한 보호관찰프로그램의 적용은 비용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② 개별적인 범죄욕구(criminogenic needs)에 따른 목표설정(targeting needs) : 대상자들은 다양한 범죄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다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대상자의 욕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들의 재범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대상자의 실업상태와 약물남용과 같은 몇 가지 범죄발생 욕구들은 지극히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이들 요소들의 개별적인 양태는 대상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일 것이다. 대상자에 대한 개입은 개별적으로 특별한 범죄관련 욕구를 목표로 할 때만 효과적이다.

③ 대응성(responsivity) : 대응성의 원칙은 대상자들에 대한 개입은 그들에게 의미가 있고 배우기에 쉽고 적당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처우가 행해질 때에 그들은 범죄억제에 유용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처우는 특정한 집단(여성, 문맹자 등)의 욕구(need)가 고려되어야 하고, 개입은 개별대상자의 필요나 수준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새로운 기술, 태도, 행동에 대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연습하고 숙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처우에 적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의 동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28) 김양곤, 이수정, 이민식,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34-36면.

④ 처우의 방법(treatmentmethod) : 적절한 개입의 형태는 보통은 구체적 기능에 중심을 두고(skills-oriented) 활동적이며,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의 해결 능력이나 대체기술을 개선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인지행동기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⑤ 프로그램의 통합성(programmeintegrity) : 프로그램에는 분명히 목표와 적절한 방법 그리고 교습자가 지켜야 할 전달 스타일에 있어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요원들은 잘 훈련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은 적절히 운영(관리)되어야 한다.

⑥ 지역사회에 근거한 프로그램(Community-based programmes) :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거나 지역사회로 연계되어 계속 지도가 유지 될 때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으로는 각 요소들 간에 밀접한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 원칙들의 단지 몇 개만이 아닌 모두가 지켜질 때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성의 분류원칙, 범죄 위험욕구에 따른 목표설전원칙, 대응성의 원칙이 간과된 개입은 재범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범법자의 범죄위험욕구 수준이 평가되고 분류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現行 分類審査制度

(1) 組 織

소년 분류심사원은 소년원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평균 30일정도 수용·보호하면서 이들의 자질과 비행행동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조치가 적합한가를 분류 심사하는 법무부 소속 시설이다.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소년 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춘천, 전주, 청주, 제주 등 4개 지방법원 소재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소년원이 설치되지 않은 인천, 수원, 창원 등 3개 지방법원 소재지의 경우 인천, 수원은 서울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창원은 부산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위탁소년의 수용관

리와 분류심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 위탁 분류심사가 주로 행해지고 있는데, 위탁 분류심사란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생육사, 가정, 학교, 사회 환경 조사와 학교 생활기록부, 심리검사, 적성검사, 건강상태, 행동관찰 등을 종합하여 소년의 비행원인과 재비행의 위험성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도 지침을 마련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위탁된 소년비행, 가정, 학교, 보호단체 등에서 분류심사를 의뢰한 소년 등에 대해 분류심사를 하고 있는데, 심사 자료는 가정법원에서 심리에 필요한 참고자료, 보호관찰소, 청소년보호단체의 교전교우 지침, 가정, 학교에서 자녀 또는 학생을 위한 지도지침, 자원봉사자, 고용인 등 적절한 보호자의 지도지침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년 분류심사원 원장 밑에 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급식관리위원회·분류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와 서무과, 분류심사과, 교무과 및 의무과를 두고 있다.

분류심사를 주관하는 분류심사과에는 정신과의를 포함하여 심리학, 교육학 등 인간관계 제 과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분류심사관을 두고 있다. 분류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분류심사과장 및 분류심사관과 교육학, 사회학 또는 정신의학에 조예가 깊은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 法的 根據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하기 전에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두 번째 병원 또는 요양소에 위탁, 세 번째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의 세 가지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잘 행하여지지 않고 주로 소년 분류심사원 위탁처분이 이용된다. 소년 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을 명랑하고 조용한 환경에 두어 심신이 안정된 가운데 자질의 분류와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는 위탁받은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경력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위탁소년의 교정에 관한 최선의 방침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고(소년원법 제24조), 분류심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사

업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위탁소년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소년원법 제25조).

소년에 대한 각종기록의 조회, 보호자나 교우와 같은 관계인 면접, 지능검사, 성격검사 등을 통하여, 첫째 보호자, 보호자의 근친자 기타 가족관계, 둘째 생육력, 교육력, 직업력, 기타 성장환경, 셋째 성격, 지능, 환경, 적성 기타 정신상황, 넷째 발육, 건강, 신체특징 기타 신체상황, 그리고 수용후의 생활태도 기타 적응상태, 비행력 및 이번사건에서의 행위, 자기개선에 대한 의지 기타 참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소년원령 제66조 제1항, 제2항).

소년 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소년부에 통지 한다. 또한 소년 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위탁소년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지체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소년원법 제27조 제1항, 2항). 소년부판사는 법원소속직원인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11조). 조사관은 소년, 보호자, 참고인, 기타 필요한 사람의 출석을 요구 하거나 방문하여 면접, 관찰 또는 심리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조사내용은 소년심사분류원에서의 분류를 위한 조사와 조사목적과 조사내용 대동소이한데 소년비행화의 경위, 보호자의 보호감독상황과 향후의 보호능력, 재비행의 위험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게 된다. 소년조사관은 조사활동과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은 일종의 판결전조사제도의 예이다.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을 위하여 행하는 조사는 오직 법관만이 할 수 있고 제3자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인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소년심판절차는 법관이 보호자의 직권 주의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대립하는 당사자는 없다. 따라서 소년부판사는 보호처분전 조사절차를 조사관에게 명하거나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특히 구속된 소년법에 대해서는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을 하게 된다.

소년 분류심사원위탁처분에 대해서 소년 분류심사원장이나 보호자 요청에 의하여 위탁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도 가능하다. 판사의 직권으로 행하는 결정을 촉구하는 의미이다.

다. 保護觀察處遇에서의 分類評價

보호관찰에 있어서 위험성의 평가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의 기회와 보호관찰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²⁹⁾ 보호관찰관이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 대한 판결전조사보고서를 완결하면, 이를 기초로 판사가 형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기 되는데, 대체로 범죄자가 보호관찰의 적격성이 있으며, 재범 등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부 형의 유예를 결정하게 된다. 물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법을 준수하고 보호관찰조건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기도 하다.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초범자가 보호관찰을 받을 가능성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높지만 과밀수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일부 강력범죄자에게까지 이제도가 확대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수용공간의 한계로 해서 보호관찰이 불가피하게 선택되기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 보호관찰을 받은 강력범죄자의 재범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위 “회전문”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판사 등은 최선의 보호관찰 결정을 해야만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사전 평가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활용이 확대되면 판사가 어떤 범죄자에게 자유형을 선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어떠한 조건과 어느 정도의 감독 수준을 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실제적인 과제로 부과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소년범들의 경우에 더욱 큰 사안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부분의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호처분이 부과되나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어떤 요인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최근에는 소년에 대한 시설수용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부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소년들에게 사회내처우, 즉 보호관찰 처분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의 내용은 아직도 세분화되거나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이 소년범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으로 받아 들여져 이들의 재범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년사범들의 재범률 증

29) 김양곤, 이수정, 이민식, 전계서, 35면.

가추세로 반증된다 하겠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류지침은 1998년도와 2002년도 형사정책연구원 과제에 근거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본 범의 내용과 범죄경력에 비교적 많은 비중을 두어 평가를 내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성인과 소년에 대하여 동일지표를 가중치만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범죄관련 지표들은 일종의 결과변수로서 처분 대상자들의 다양한 범죄욕구의 평가와는 거리가 있다. 재범을 예방함에 있어 개별화된 범죄욕구와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와 처우가 효과적이라는 지금까지의 논리에 근거하자면 현행 분류지침은 다만 결과론적인 기록들만을 근거로 하여 편의적으로 마련한 기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피교육 대상자들 입장에서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냄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높은 순기능을 발휘 하듯이 보호관찰 대상자들도 그들의 범죄위험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평가지침이 마련되면 이들을 선도하고 교화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데에 더 효과성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소년만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비행촉발요인을 탐색하는 일은 이들의 추후 재범예방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제2절 少年에 대한 保護觀察 現況

1. 保護觀察處分別 對象者

1989년 7월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은 소년 대상자는 2004년 말까지 49만 여명을 넘어서 우리사회에서 소년범에 대한 중심적인 처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표 1-1>³⁰⁾은 1989년 이후 2004년까지의 소년 대상자의 연도별 접수 및 증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소년 대상자의 접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에는 연간 접수사건이 5만 2,283건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소년대상자의 보호관찰 등의 부과 건수는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2004년도 연간 접수인원은 2만 6,531건이었다.

30) 김양곤·이수정·이민식,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81면 인용.

소년 사건의 감소는 청소년 절대 인구 및 소년범죄 발생 건수의 감소, 비행·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다이버전³¹⁾의 활용 증가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 소년사건의 접수 및 소년사건비율 변화추이

(단위 : 건, %)

연도	소년사건 (병과율*)			성인사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접수사건(소년비)
1989	4,936			
1990	14,732			
1991	18,732	2,860(15.3)	1,519(8.1)	
1992	21,532	3,546(16.5)	1,589(7.4)	
1993	25,751	3,811(14.8)	1,479(5.7)	
1994	28,256	5,331(18.9)	2,270(8.0)	
1995	33,311	5,405(16.2)	2,004(6.0)	
1996	38,839	8,015(20.6)	1,367(3.5)	
1997	48,564	12,919(26.6)	1,035(2.1)	
1998	52,283	15,735(30.1)	721(1.4)	
1999	44,419	12,613(28.4)	1,043(2.3)	37,609(54.2)
2000	43,584	10,606(24.3)	1,921(4.4)	49,713(46.7)
2001	35,241	10,121(28.7)	1,939(5.5)	56,351(38.5)
2002	30,544	7,584(24.8)	1,206(3.9)	63,123(32.6)
2003	29,015	7,041(24.3)	1,544(5.3)	63,822(31.3)
2004	26,531	5,683(21.4)	1,874(7.1)	70,494(27.3)

주. 1) 병과율은 소년보호관찰 사건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병과비율

2) 소년비는 전체 보호관찰대상자 중 소년 대상자의 비율

31) 다이버전이란 유죄판결이라는 형사소송절차의 최종목적지를 향하는 커다란 흐름 가운데에서 그 종착점에 도달하기 전에 그 흐름의 일부를 방향전환 하여 본류로부터 이탈시키는 일체의 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이버전에는 경찰단계, 검찰수사 및 수사종결처분단계, 형사법원의 공판단계에서 형사사건을 종결시키는 각종의 공식적, 비공식적 조치들을 말한다. 범죄사건을 공식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이 처리하는데 부작용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왔으며, 이는 소년사건에 더욱 그러하다. 소년범죄인 측에서 보면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국가적으로 볼 때 사법시설의 유지관리에 예산상의 문제 이외에도 범죄국가라는 여론의 비판도 심각하다. 이런 점에서 정규의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벗어나는 좀 더 융통성이 있고 인간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이 바로 다이버전 제도이다.

소년사건의 감소는 성인 사건의 증가와 맞물려 보호관찰소의 소년사건과 성인사건 구성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다. 1997년 성인범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으로서 이후 성인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 이르러서는 성인접수사건이 소년접수사건을 초과하여 전체 보호관찰 사건에서 소년사건은 46.7%로 과반수 이하로 감소하였고 이후 이 추세가 계속되어 2004년도 소년사건의 접수율은 전체사건의 27.3%에 불과하였다.

2. 處分類型別 少年對象者 事件 現況

<표 1-2>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소년대상자에 대한 처분 내용별 실시사건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소년에 대해 보호관찰 등의 처분 부과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형법에 의한 집행유예부 병과처분, 검찰단계에서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³²⁾에 대한 선도처분 순이다. 2004년도 실시사건을 기준으로 이들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소년법에 의한 처분이 전체 소년사건 4만 8,811건 중 4만 1,281건(84.6%)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3호 처분은 2만 5,617(52.5%)건, 1·2호 처분이 1만 3,851(28.4%)건이었으며, 6호나 7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 중 가퇴원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사건은 1,813(3.7%)건이었다.

형법에 의한 처분으로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자가 4,167건(8.5%),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부 집행유예자가 407건(0.8%)이었으며, 소년교도소 등에서 형을 집행하다가 가석방 된 대상자는 158건이었으며 이외에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처분자는 2건이었다.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237건으로 이중 대다수인 228건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자이다. 한편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접수된 사건은 2,558건(5.2%)이었다.

32) 범죄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재범의 가능성이 적은 18세 미만의 비행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공안사범, 마약사범, 흉악범, 조직적 또는 상습적 폭력배, 치기배, 현저한 파렴치범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1-2> 소년대상자에 대한 처분내용별 실시사건³³⁾

(단위 : 건,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구성비
형 법	선고유예	7	3	-	-	1	2	
	보호관찰부 집유	6,823	7,350	6,381	5,415	4,404	4,167	(8.5)
	단독명령 집유	1,543	1,096	694	445	397	407	(0.8)
	가 석 방	738	739	476	295	132	158	
	소 계	9,111	9,188	7,551	6,155	4,934	4,734	(9.7)
소년법	제1·2호 처분	21,118	19,954	17,573	16,109	15,875	13,851	(28.4)
	제1·3호 처분	45,401	42,214	33,943	29,219	27,513	25,617	(52.5)
	가 퇴 원	4,385	4,588	4,956	4,235	3,206	1,813	(3.7)
	소 계	70,904	66,756	56,472	49,563	46,594	41,281	(84.6)
성폭력 법	보호관찰부 집유	297	332	334	312	249	228	
	단독명령 집유	48	42	31	21	17	9	
	소 계	345	374	365	333	266	237	(0.5)
가정폭 력 법	보호관찰부보호처분	4	5	7	5	3	-	
	단독명령 보호처분	-	1	2	-	-	1	
	소 계	4	6	9	5	3	1	(.00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2,479	3,868	3,517	2,839	3,199	2,558	(5.2)
소년사건 합계		82,843	80,192	67,914	58,895	54,996	48,811	(100.0)
전체사건(성인포함)		135,211	146,856	145,021	146,090	147,734	148,818	

주. 1) 보호관찰부는 해당 처분에 보호관찰처분이 부과된 사건이며, 단독명령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만이 부과된 경우임.

2) 구성비는 소년사건에 전체에 대한 각 처분별 구성 비율임

자료 : 보호관찰통계연보(2004,2005)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처분별 소년사건의 변화 추이를 보면 형법, 소년법 등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1·2호 처분이 전년도에 비해 2,204건, 1·3호 처분이 1,896건으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두드러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김양곤·이수정·이민식, 전계논문, 83면 인용.

3. 少年對象者の性別現況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성별 구성을 <표 1-3>이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남자 소년대상자의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자 소년대상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 시행 이후 10% 이하의 비율이 차지하던 여자 소년대상자의 비율은 2002년을 기준으로 10% 선(10.3%)을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4년에는 12.3%에 이르렀다. 소년대상자 중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자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처우개입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표 1-3> 소년대상자의 성별 구성 및 변화추이

(단위: 건, %)

연도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1999	30,231(100.0)	28,341(93.7)	1,890(6.3)
2000	29,182(100.0)	27,022(92.3)	2,260(7.7)
2001	24,443(100.0)	22,137(90.6)	2,306(9.4)
2002	20,217(100.0)	18,142(89.7)	2,075(10.3)
2003	18,696(100.0)	16,638(89.0)	2,058(11.0)
연도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04	17,671(100.0)	15,501(87.7)	2,170(12.3)

주. 1)법무부 훈령에 근거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기소유예”는 제외

자료: 보호관찰통계연보(2004, 2005)

4. 少年對象者の罪名別現況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유형별 현황은 <표 1-4>가 보여주고 있다. 전체 사범중 절도 폭력 사범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강력 범죄사범, 사기·횡령사범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1-4> 죄명별 접수사건 현황 및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분	합계	폭력	절도	성폭력	강도	환각 마약	교통	공갈 협박	사기 횡령	청소년	기타
1999	30,231 (100.0)	10,812 (35.8)	12,370 (40.9)	923 (3.0)	2,270 (7.5)	1,150 (3.8)	1,406 (4.7)	181 (0.6)	305 (1.0)	- (-)	814 (2.7)
2000	29,282 (100.0)	10,134 (34.6)	12,150 (41.5)	869 (3.0)	2,147 (7.3)	1,045 (3.6)	1,589 (5.4)	148 (0.5)	360 (1.2)	- (-)	840 (2.9)
2001	24,443 (100.0)	8,654 (35.4)	9,129 (37.3)	726 (3.0)	1,591 (6.5)	660 (2.7)	1,926 (7.9)	161 (0.7)	482 (2.0)	59 (0.2)	1,055 (4.3)
2002	20,217 (100.0)	6,918 (34.2)	7,786 (38.5)	662 (3.3)	919 (4.6)	301 (1.5)	1,763 (8.7)	163 (0.8)	890 (4.4)	66 (0.3)	749 (3.7)
2003	18,696 (100.0)	5,665 (30.3)	7,180 (38.4)	613 (3.3)	948 (5.1)	129 (0.7)	1,895 (10.1)	109 (0.6)	1,224 (6.5)	55 (0.3)	878 (4.7)
2004	17,671 (100.0)	5,846 (33.1)	6,573 (37.2)	776 (4.4)	984 (5.6)	69 (0.4)	1,682 (9.5)	29 (0.2)	967 (5.5)	107 (0.6)	638 (3.6)

- 주. 1) 계는 당해연도에 접수한 인원 중심의 개념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2.3 제정)위반 사건은 2001년부터 통계산출
 3) 2004년부터 죄명별 분류가 변경됨, 공갈사범은 폭력사범으로 흡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은 풍속사범으로 흡수
 4)법무부훈령에 근거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제외함.
 자료: 보호관찰통계연보(2004, 205)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 전체 1만 7,671건 중 절도사범이 6,573건(3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폭력사범 5,846건(33.1%), 교통사범 1682건(9.5%), 강도 등의 강력사범 984건(5.6%), 사기·횡령사범 976건(5.5%) 순이다. 1999년 이후 범죄유형별 변화추이를 보면, 절도사범 및 폭력사범은 전반적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으며, 환각 마약 등의 약물사범은 전체 발생건수에서는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감소 폭은 매우 크다. 반대로 교통사범 및 사기·횡령사범은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년에 있어서 사기·횡령사범의 증가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및 온라인 게임 등의 증가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기범죄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5. 少年對象者의 職業別 現況

소년 대상자의 직업별 현황은 <표 1-5>가 보여주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소년대상자 중 학생은 1만 128명으로 전체 소년대상자의 5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무직자가 5,924명으로 33.5%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 중인 소년대상자는 전체대상자의 10%이하로 무직인 소년대상자에 대해 복학 및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관찰 처우 개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1-5> 소년대상자의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학생	서비스 관련		사무	기능원	단순 노무	무직	기타	전체
2002	10,687	1,272		222	149	150	7,490	247	20,217
	(52.9)	(6.3)		(1.1)	(0.7)	(0.7)	(37.1)	(1.2)	(100.0)
2003	10,418	1,002		153	111	147	6,566	299	18,696
	(55.7)	(5.4)		(0.8)	(0.6)	(0.8)	(35.1)	(1.6)	(100.0)
2004	10,128	623	192	90	195	337	5,924	182	17,671
	(57.3)	(3.5)	(1.1)	(0.5)	(1.1)	(1.9)	(33.5)	(1.0)	(100.0)

주. 1) 2004년부터 직업분류 방식이 변경, 2003 이전의 직업분류 방식은 학생, 도소매업·서비스관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무직, 관리자·사무종사자, 자영업(농업·어업·임업, 광업·제조업, 도소매·숙박·음식업점, 기타 자영업),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공무원, 기타였음.

2) 2004년부터의 직업분류방식은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임어업종사자, 기능원 및 기계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 기타(공무원, 학생, 주부, 무직, 기타)임.

자료: 보호관찰통계연보(2004, 2005)

6. 保護觀察 期間 中 再犯者 現況

<표 1-6>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 현황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표 1-6> 소년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률 현황

(단위 : %)

근거법	처분내용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형법	소계	6.9	7.4	7.9	8.6	9.2	16.0	
	선고유예	1.1	1.1	1.1	1.1	1.0	0.0	
	집행유예	소계	10.3	10.5	10.8	11.6	12.2	17.1
		보호관찰부	13.2	13.4	13.4	14.5	14.9	19.8
		단독명령부	3.5	3.4	3.8	4.0	5.2	15.9
가석방	0.8	0.9	1.0	1.0	1.1	2.3		
소년법	소계	9.8	9.8	9.8	10.2	10.3	15.9	
	보호처분 1·2호	3.4	3.4	3.4	3.5	3.5	5.9	
		1·3호	15.2	15.3	15.4	16.0	16.0	24.0
	가퇴원	12.6	12.6	11.7	12.7	13.4	27.0	
성폭력법	소계	4.9	6.5	6.7	6.8	6.8	8.5	
	선고유예	0.0	0.0	0.0	0.0	0.0	0.0	
	집행유예	소계	5.1	6.7	6.9	7.0	7.0	2.3
		보호관찰부	5.6	7.3	7.6	7.6	7.7	25.0
단독명령부		1.4	3.0	2.6	3.1	2.8	5.1	
가정폭력법	소계	0.0	0.0	0.0	0.0	9.1	0.0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0.0	0.0	0.0	0.0	12.5	0.0
		단독명령부	0.0	0.0	0.0	0.0	0.0	0.0
소년사건 재범률		9.5	9.6	9.7	10.1	10.2	15.9	
성인사건 재범률		3.4	3.1	3.1	3.3	3.3	12.4	

주. 1) 2003년까지는 실시인원에 대한 당해연도 재범여부를 파악하여 재범률을 산정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당해연도 종료인원에 대한 전체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여부를 파악하여 재범여부를 판단함.

2) 2004년부터는 단독명령은 재범산정에서 제외,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건에 대해서만 재범률을 산정

2003년 이전에 비해 2004년의 재범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2004년부터 재범통계의 집계방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³⁴⁾ 2004년도 소년대상자 전체의 재범률은 15.9%로 성인대상자의 재범률 12.4%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관찰기간 중 성인에 비해 소년 대상자의 재범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각 처분법으로 본 대상자의 재범률은 형법에 의한 대상자의 재범률은 1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소년법 15.9%, 성폭력특별법 5.9%순이다. 그러나 처분내용별 재범률에서는 소년법에 의해 소년원 수용 중 가퇴원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은 자의 재범률은 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폭력법에 의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자의 재범률이 25%, 소년법상으로 1·3호 처분을 받은 소년대상자는 24%순이다. 이외에도 형법상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자의 재범률이 19.8%,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조건부 집행유예자의 재범률이 15.9%로 비교적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34) 2004년 이전에는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자로 인지된 자만을 재범자로 파악, 이를 집계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보호관찰기간 종료 시 모든 대상자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재범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제4장 少年保護觀察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제1절 少年保護觀察制度의 問題點

1. 保護觀察對象者の 年齡

우리나라 소년법상 보호대상의 하한연령은 12세 미만이다. 따라서 12세 미만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즉, 보호필요성이 있더라도 아동복지법의 대상은 되겠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자는 될 수 없다. 소년법 보호대상의 하한 연령에 대하여 스웨덴은 14세 이하를 일본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내에서는 하한연령을 인하하거나 그 하한을 두지 말자는 견해가 있다. 그 논거로는 첫째, 일반적으로 초발비행의 시기가 빠른 소년일수록 비행 상습화의 위험성이 높다. 둘째, 청소년들의 정신적·육체적 발육의 정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고, 실제에 있어서도 12세 미만의 보호필요성이 인정될만한 소년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12세 미만이라 하여 소년보호 테두리밖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셋째, 이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특히 비행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미국에서는 최저 6세를 하한으로 정하고 있는 주가 있고, 영국은 10세, 프랑스와 일본은 하한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6세보다는 7세를 소년법상 하한연령으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하한 연령이 없다고 하였으나 13세 미만으로 보고 있으며, 독일은 13세 이하이며 스웨덴은 14세 이하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초발비행의 시기가 빠른 소년일수록 비행 상습화의 위험성이 높고, 이러한 연소자의 치료는 조기발견과 조기처우가 중요하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하한연령을 두지 않고 연소 초발 비행 자를 찾아 조기에 처우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보호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행형이나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풍토가 될지 의문이다.

2. 保護觀察 擔當 人力의 不足 및 專門性的 缺如

보호관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89. 7. 1. 소년법, 보호감호소 가출소자, 치료감호소가 종료자에 한하여 처음 실시했으나, 재범방지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사범(199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1995),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가석방자 등 성인형사범(1997), 가정폭력사범(1998), 윤락청소년(2000)까지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그 대상영역을 전면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1989년 제도도입 당시 8,382명에 불과하던 보호관찰대상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일 관리인원의 측면에서도 교도소 기결수용인원의 1.4배에 달하는 53,000여명을 상시 관리하는 등 이미 국가 교정업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보호관찰대상 인원이 급증하고는 있으나 보호관찰 담당인력의 증원은 미흡하다. 현재 전국에 26개 보호관찰소가 있으며 394명의 직원이 연간 14만 여명에 이르는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셈으로 현재 보호관찰담당자 1인당 거의 355명 정도의 보호관찰대상자를 맡고 있는 실정인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66명이나 영국의 23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아 제대로 된 보호관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는 특히 약물사범이나 성폭력사범 등과 같이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현장감독위주의 집중적인 밀착지도 등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필요하나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또한 적은 직원으로 많은 지역을 관리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한 사람이 넓은 지역을 관장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의 면에서 평가하면 실익이 적고 실제 처리하는 일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전문보호관찰인력의 부족은 보호관찰업무의 급증추세에 따라 직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현장 감시 중에 순직하거나, 보호관찰소를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 부족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판결전조사 등 각각 독립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차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무수행의 차별화·전문화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호관찰이 적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직원의 인원보충이 시급하며,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보호관찰의 재범방지 기능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소에서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약물상담전문가 과정 각종 심리

검사 과정 등 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업무관련 전문화 교육과정에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수준에 있다.

보호관찰의 제도적 가치는 학계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고 입법을 통한 구체적 활용이 증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호관찰본부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정책연구·기획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선기관은 집행 지도 감독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못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형사정책을 선도하게끔 정책형성 기능을 높이는데 조직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야 함에도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지게 하고 있다.

3. 少年保護觀察對象者의 分類體系

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적 진행과정에서 분류체계를 구조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대상자에 대한 평가와 처우 등의 결정 과정에 일정한 체계(structure)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높은 결정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는 평가의 타당성을 가져다준다. 둘째로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보다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처분과 처우개입을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소년사법절차의 결전과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매우 임의적이고 주관적이며 직관적이었다. 특정 사안을 평가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요인을 선택할 것인가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평가자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즉 평가자들이 가진 철학과 경험, 그리고 특정 요인이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에 따라 평가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감독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보호관찰관은 범죄내용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관찰관은 금지약물의 남용정도와 같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또 다른 관찰관은 대상자의 욕구수준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이처럼 평가와 분류기준이 다양함으로 인해 평가자들 간에 처우와 감독수준의 내용이 각기 달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상호 유사한 상화에 처해 있는 대상자들에게 각기 다른 처분 등을 함으로써 형사사법 처우에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구조화된 분류평가방식은 대상자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원하는 결과와 가장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몇몇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간단하면서도 표준화된 형식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사안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자들과 사건 전체에 적용되고 그 결과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대상자를 평가하고 분류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평가도구에 의한 점수가 '20 혹은 그 이상'인 경우에는 집중보호관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구조화된 평가방식이 갖는 두 번째 주요한 의의는 형사사법체계와 관련기관의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히 배분 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경찰에 체포된 청소년 모두를 구금할 필요는 없으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 모두가 집중보호관찰과 같은 강화된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년원 등에 수용된 대상자 모두가 엄중한 보안시설에서 계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대상자의 문제에 따라 개별적인 처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소년사법이 갖는 특징이라 할지라도, 구조화되지 않은 자의적인 평가방식은, 보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대상자의 위험성 등을 측정하는 방식과 비교해볼 때, 적합성 측면에서 의문의 여지가 많은 방법이라 하겠다. 자의적인 평가방식은 고위험군 대상자에게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처분이나 감독수준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저 위험군 대상자에 대해서 불필요한 지나친 개입이 따르는 처분이나 감독수준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하겠다. 어떠한 경우이든 적절하지 못한 처분의 부과를 초래하는 평가방식은 형사사법의 한정된 지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비효율성을 가져온다.³⁵⁾

4. 判決前調査(保護觀察의 開始 前 活動) 및 實行에 관한 問題

현행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해복여부등 피고인에게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조사 내용에 따라 보호관찰을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³⁶⁾

35) 김양곤·이수정·이민식, 전계보고서, 35면.

36) 김화수, 전계논문, 58면.

판결전조사는 재판과정의 유죄·무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형량을 정하는 기초 자료로서 인격과 환경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는 제도로서 본래 미국에서 Probation과 관련해서 발생한 제도이다.

지금은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널리 채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표준 probation법에는 「보호관찰의 서면에 의한 보고가 제출되어 법원이 이를 검토한 뒤가 아니면 probation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의 범죄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만으로서는 불충분하므로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취급하기 곤란한 구체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위험성의 정도, 소질, 성격, 정신상태, 지능정도, 건강상태, 갱생의욕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온 과정, 가족, 학교, 교우관계, 직장 등에 대한 사회조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 내의 사정이나 이성과의 관계와 같은 것은 이제도의 활용으로 구명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주로 검찰이나 사법경찰요원이 작성한 학력, 경력, 가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전과조사, 지문조회에 대한 답신 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피고인 진술서의 신뢰성이나 인권문제를 생각해 볼 때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판결전조사제도는 순환보직에 의해 특별한 경험이 없는 일반직원들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조사내용도 가정환경이나 범죄 경력 등 아주 기본적인 내용의 수집에 그치고 있어 본래의 의미를 충족시키기에는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판결전 조사 내용이 판사의 결정에 가장 권위 있는 문서로서 취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흡한 내용으로 인해 결국 경찰, 검찰조서, 소년 분류심사원의 의견서가 제시되며, 또 많은 경우 변호사의 변론이 판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판결전 조사의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5. 운영프로그램에 관한 문제

수강명령의 시행은 보호관찰관과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간의 유기적인 운영 하에 효율성을 기해야 하며 비행청소년의 선도과정에 필요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위한 적절한 교육훈련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교육훈련 수강명령 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수강제도는 외국의 경우³⁷⁾처럼 연령, 범죄 등의 유형에 따라 수강명령에 관한 기준과 정형이 없는 실정이므로 법원에서 명령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당국이 보호관찰관련법령의 집행에 관한 기준규정을 설치하고 수강명령의 적정운영을 위한 전문조직과 직원의 확충, 교육설비의 확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유형별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강명령은 심성개발훈련, 인간관계 및 성교육, 약물남용 폐해 교육 등 집단처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집단처우의 방법은 한 사람의 치료사가 다수를 상대로 동시에 치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처우보다는 경제적이다. 집단처우의 또 다른 장점은 개인보다는 단체가 문제를 더 잘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수강명령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규정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중복하여 강의를 들어야 하는 실정이며, 프로그램의 획일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대상자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7) 영국의 경우 21세 미만의 자가 범법으로 징역형 정도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경찰서, 학교등에 설치운영되는 junior center(17세 미만의 자), senior center(17세 이상 20세 미만), 여성을 위한 center등에서 24시간이내의 수강을 받도록 하는 제도,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범법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자에게 징역형 대신 6월 이상 3년 이내의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 보호아래 약물 오남용방지 교육수강, 특정 활동 참가 등을 명하는 특정강좌 수강제, 보호관찰대상자가 일과시간 중에 기본적 사회적응력 향상과 재범약습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강 등을 받도록 하는 day center등을 운영하고 있다.

제2절 少年保護觀察制度의 改善方案

1. 少年 保護處分の 不合理性에 대한 改善方案

가. 科學的 分類審査技法의 開發에 따른 處分の 多樣化

비행소년에 대한 분류심사는 소년 개개인의 전인격적 평가를 통해 요보호성을 판단하고 장차합리적인 처우를 기하기 위한 과정이며 분류심사의 결과가 처우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년의 개별특징이 과학적으로 평가 될 수 있는 분류심사 기법의 개발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복잡하고 미묘한 인격구조를 가진 인간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단순히 지능검사나 적성검사 등 몇몇 지필검사와 기구검사 결과 나타난 자료에 의해 진단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소년 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는 교정시설이라는 제약된 공간에서의 작업이므로 이러한 제약요인을 고려하여 소년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분류심사 기법을 연구 개발하고 그것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류심사에 따르는 처분도 분명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나. 受用期間 동안의 처우프로그램의 活性化

소년 분류 심사원에서 처우프로그램을 일본의 분류처우와 같이 활성화해야 한다. 소년 분류 심사원의 수용은 보호처분은 아니다. 그렇지만 소년 분류 심사원에 수용될 경우 소년은 1개월 또는 그 이상 수감되어 있게 된다. 보호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적인 관찰과 신병의 보전만 중시 한다면 변화가능성이 많은 시기에 적지 않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다. 단순히 시간만 보내면 원래 받아야 할 보호를 박탈당했다고 하는 면에서 인권침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각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일본의 분류처우와 같이 좀 더 심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검토해야 할 문제가 위탁기간이다. 현행법상 소년 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2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인데 수용기간이 이와 같이 길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이 있다. 먼저 비행소년이 수용되어 있는 동안 특별한 교정처우가 없기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이 중단되고, 한편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다른 비행소년으로부터 악성오염의 우려가 많아진다. 또한 소년 분류심사원 위탁은 이론상으로는 소년의 복지를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짧을수록 바람직하다.

2. 保護觀察機構 및 擔當人力問題에 대한 改善方案

가. 保護觀察委員의 全文成確保

보호관찰의 성패는 보호관찰위원의 능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호관찰은 결국 관찰자와 대상자간의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일반 성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청소년기에는 모든 발달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는 이들 간의 깊은 이해와 신뢰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관찰대상자는 일정한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식이 확고하고 책임감과 열의 및 따뜻한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 보호관찰위원은 일정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관찰업무에의 적격성 테스트의 방법을 거치고 업무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관찰기관은 추상적 규칙 등을 사례를 적용한다든지, 특히 외국의 사례를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을 갖는 성향이 띠기 쉽다. 보호관찰위원이 처리하는 업무는 대상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비공식적인 것으로서 전형적 관찰업무와는 다르다는 점에 주의 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비공식적이고 인격적인 업무처리가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따라서 긴밀하고 그 사회의 전체적인 의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자와의 긴밀한 신뢰관계가 필요하게 된다.

보호관찰위원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것은 독일처럼 사회사업의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 한해서, 또는 일본의 경우처럼 국가공무원 상급시험이나 법무성의 시험에 의하여 임용되거나,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및 기타 갱생보호에 관한 전문적 지식에 바탕을 두고 보호관찰, 인격고사 기타 갱생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보호

관찰업무와 관련된 학문분야를 전공한 사람들, 즉 보호관찰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수습기간을 이수한 사람을 보호관찰관으로 충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과 일본에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보호관찰의 임용에 관하여 이처럼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보호관찰위원의 전문지식과 경험 없이는 보호관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며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관찰위원이 보호관찰제도의 초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機構擴充 및 豫防委員의 積極的 活用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전국이 법원지원이나 검찰지청 단위별로 보호관찰소가 설치되도록 하여 관할 지역의 범위를 축소하고, 비행소년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호관찰 업무의 원활함을 기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제도는 사회전체의 참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전문보호관찰인력의 보족을 고려한다면, 범죄 예방위원 등의 재교육을 통한 일정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적극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수가 지급되는 예방위원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범죄자를 사회 내에서 처우함에 있어서는 성질상 그 지역사회의 주민의 협력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예방위원은 국가기간과 일반사회를 공간적으로 연결시켜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보호관찰기관이 보호관찰의 행정적인 업무와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노력을 분명히 구분하는 차별업무가 필요하리라 보여 진다.

3. 少年保護觀察對象者의 分類體系의 改善方案

분류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 먼저 법원의 분류심사의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³⁸⁾ 분류심사의뢰는 판사의 재량이지만 이의

38)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233-234면.

중요성을 인식하여 가급적 심리전에 모든 소년이 소년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분류심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류심사관의 전문화와 인력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류심사관은 보호소년에 대한 정확한 인격이해, 요보호성 판단을 위해 인간관계 제 과학에 통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회발전에 따라 환경과 가치관의 변동이 계속되므로 전문과학에 대한 부단한 연구를 계속해야만 조사의 과학성을 담보할 수 있고 소년처우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제도의 성패는 바로 이 분류심사관의 능력과 역할 수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직원을 선발해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행은 복잡한 원인과 동기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사를 통한 대책의 수립은 법률학에만 의존할 수 없고 제반 사회과학의 관여가 요청된다. 따라서 사회사업, 교육, 심리, 정신의학 등을 전공한 전문직원의 증원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소년형사사건에서의 조사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사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조사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이 있는데, 이와 같이 소년에 대한 조사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 소년의 경우는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분 없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요망된다.

4. 判決前調査에 대한 改善方案

가. 判決前調査 活動의 活性化

판결 전 조사 활동의 활성화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실무에서 조사인력과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상당수 판결 전 조사가 주로 피고인과 가족면담에만 의존하고 현지 확인조사나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확보, 전문 인력의 채용과 양성, 전문적인 감정인원의 확보, 적절한 조사기간의 보장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판결전조사를 요구한 건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전

조사제도의 활용에서 지역적 편차가 너무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특정지역에서 근무하는 법관들이 아직도 판결전조사제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결국 보호관찰소 조직의 미비에서도 그 원인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결전조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며, 보호관찰소의 조직이 확대개편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³⁹⁾

나. 少年調査官 人力擴充

조사관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조사관의 대폭적인 증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년문제의 중추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울 가정법원에서 전문조사관이 아닌 일반법원 행정직원 중에서 순환보직으로 몇 명의 조사관(5급)을 배치한 상황에서는 조사관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조사관제도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조사관으로 선임하고 이후 지속적인 전문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급 조사관의 채용이 어렵다면 현재가사조사관의 경우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7급 계약직 조사관보를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조사관에 의한 조사는 소년 분류심사원에서의 조사와는 달리 소년들을 수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를 활성화한다면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현재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재택 분류심사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39) 백찬수, “소년 보호관찰 제도가 소년범죄에 미친 영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 90면.

40)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225면.

5. 운영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改善方案

가. 프로그램의 活性化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와 관련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분야는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판결문상에 적시하는 것보다 집행기관인 보호관찰소에서 판단하여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관해서는 일관성 있는 지도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속의 상급기관의 업무로 법령과 예규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행정업무의 기동성과 단순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시간적·행정적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집행 및 위탁기관 등의 집행상황통보와 시설 등의 조정문제도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이상 해당기관에 맡기고 법원에서는 재판 시 대상자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만 자료 등의 통보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나. 先進 保護觀察技法 導入

보호관찰제도가 1997년 성인범에게까지 전면 확대 실시된 이후 업무전체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사안조사 등 변화된 업무에 대해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집행에 있어서는 기존에 소년범에 대하여 적용하던 기법 이외에 성인범에 대해 적용할 전문기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출석상담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되어왔으나, 인력·예산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전면적으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진국에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재범통제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보호관찰기법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集中保護觀察 프로그램(IPS : Intensive Supervised Probation)

일반보호관찰보다는 감독의 강도가 높고 구금보다는 강도가 낮은 감시·감독 제도로써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분류 중 A중, 급등 보호관찰관의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지도를 요하는 보호관찰대상군을 감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⁴¹⁾ 즉 보호관찰대상자와의 접촉을 늘리고 대상자에 대한 통행금지 시간을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지도·감독·원호를 실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호관찰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3가지 유형으로 실시되고 있다. 첫째 유형은 구금전 환형이다, 이는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통합하는 모형으로 이는 구금형과 사회내처우의 중간단계로서의 집중보호관찰을 선고하는 것이며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로 조기 석방형이 있다. 이는 재소자를 감옥으로부터 일찍 석방하여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인데 가석방의 조건으로 집중보호관찰을 부과하거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중인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셋째는 보호관찰 강화형이다. 이는 보호관찰대상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를 선별하여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범죄자 개인에 초점을 두고 집중 감시함으로써 재범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구금의 직접적인 대안은 될 수 없지만 교도소 과밀을 줄이고 공공비용 절감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집중 보호관찰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집중보호관찰의 운영상 주요 특징을 보면 통상 다음과 같이 6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① 광범위 감독(보호관찰은 1주일에 여러 차례 대상자와 주기적인 접촉을 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 친구, 가족들과도 접촉하여 대상자의 행동을 폭넓게 감시·감독한다)

② 집중 감독 (통행금지, 약물사용, 여행, 취업, 지역사회봉사 등 특정한 의무 조건의 준수를 집중적으로 감시·감독 한다)

41) 이현희, “미국의 밀착보호관찰 프로그램”, 「보호관찰제도의 회고와 전망」,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9, 201면.

③ 수시감독(수시로 약물테스트를 하고 예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행금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한다)

④ 단계적 감독(단계에 따라 보호관찰은 다른 강도로 진행된다. 각 단계마다 준수사항과 의무조건이 다르며, 기간이 지나면서 점차 의무조건이 완화되고 마지막단계에서 일반보호관찰로 바뀐다)

⑤ 엄격한 제재(준수사항위반이나 재범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가한다).

⑥ 종합적 감독(전문적 훈련을 받은 보호관찰관들이 함께 협조하여 교정 대상자들을 감시·감독한다) 등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집중보호관찰의 주요골자를 바탕으로 하여 2001년부터 우리도 집중보호관찰을 전격 도입,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내용에서는 선진국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업무여건과 사회 환경을 감안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시모델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는 “21세기 한국형 보호관찰”을 정립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범실시 대상자는 타 대상자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보다 높지만 소년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가퇴원자를 위주로 한다. 가퇴원자에 대해 기존의 출석상담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감독 수준을 현재에 비해 4~5배 이상 강화하고 불량교우 및 주변의 비행요소와 접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재범율을 10%이하(현재 약13%)로 낮추는 것이 1단계 목표이다. 사회복지지원 측면에서도 보호관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소년원의 개별 사후지도 방안을 적극 수용하고, 대상자의 가정환경, 희망진로, 기능 등을 적극 파악·고려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지원한다. 또한 대상자의 심리상태, 문제점 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집단상담, 심리치료과정 등 청소년기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도 적절히 적용하여 내적 성숙을 위한 방안 마련도 집중보호관찰의 또 다른 내용이다.

2001년도에 시행한 ‘집중보호관찰제도’는 비록 부분적 시범실시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인력부족으로 적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처우기법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호관찰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함께 지속적인 보완을 하여 외국의

선진보호관찰기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된 한국형 보호관찰로 정착시키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電子監視 프로그램

전자감시제도는 일정한 조건으로 가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등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유형의 하나이다.⁴²⁾ 이러한 감시제도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대략 10여개 국가⁴³⁾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도는 유·무죄확정 전 재판진행 중에 있는 자에게 미결구금에 대신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실시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유죄확정 후 형벌집행의 단계에서 집중감독 보호관찰프로그램(intensive supervision program)이나 가택구금명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부되어 실시되고 있고, 가석방자나 소년비행자, 여성범죄자, 음주관련범죄자 등 각 시행국가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전자감시의 대상자로는 재범위험성이 낮고, 폭력적이지 않은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⁴⁴⁾

우선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사회 환경의 조성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내처우인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이 사회구성원이 일

42) 양승문, 전제논문, 145면.

43) 도입하여 시범 실시한 순서로 보면, 미국이 1983년, 캐나다가 1987년, 호주가 1988년, 영국이 1989년, 싱가포르가 1991년, 이스라엘이 1992년, 스웨덴이 1994년, 뉴질랜드와 네덜란드가 1995년, 스위스가 996년 그리고 독일이 2000년 등이다.

44) 전자감시 방법으로는 통상 3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계속적 감시시스템(active system)이다. 이 방법은 감시대상자의 신체부위에 송신기를 부착시키고 이 송신기가 일정한 시간을 주기로 무선신호를 자동적으로 발신하여 소재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단속적 감시시스템(passive system)으로 중앙감시 컴퓨터가 임의로 대상자의 외출금지 시간에 거주지에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소재를 확인하는 방식인데 대상자에게 일정한 질문을 하여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는 음성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는 탐지시스템(tracking system)으로 이는 대상자가 부착하고 있는 송신기가 발송하는 무선신호를 부근을 순회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의 차량에 있는 수신기가 탐지하여 소재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방법이다(홍정원, “성인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원호 등 보호관찰기법에 관한 연구”, 「법무연구」 제25호, 법무연수원, 1998, 248면 참조).

반적으로 갖고 있는 형벌과 형벌의 집행에 대한 인식을 무시하고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보 내지 도입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즉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이 현 형벌과 형벌집행에 대한 일반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면 이는 법질서 차원의 문제발생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 전에 그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 내지 계몽 또는 문제 발생의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로서 전자감시장치의 마련과 시설의 구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물론 외국의 입법례나 운영 실태를 비교하여 그 중의 어느 하나를 택하면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내는 작업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도도입 전에 전자감시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사에는 외국의 전자감시프로그램의 연구 및 자료수집과 외국의 전자감시프로그램의 방문 등을 통하여 행하고, 근거규정의 신설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전자감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담당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자감시장비 및 운영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일부의 대상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감시를 행함으로써 기존제도의 운영과 그 결과를 비교 고찰 하여 문제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전자감시제도가 우리나라의 제도의 하나로 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패트롤 保護觀察(Mobile Office & Team Probation)

패트롤 보호관찰은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순회감독시스템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기법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2인이 팀을 이루어 주거지나 생활근거지를 불시 방문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하는 집중보호관찰의 한 유형이다.⁴⁵⁾ 외향적으로 보면 현재의 주거지 방문과 큰 차이가

45) 김준호·노성호·이성식·곽대경·이동원·박철현, 「청소년 비행론」, 청목출판사, 2006, 516면.

없는 듯 보이나 패트롤 보호관찰의 주요특징은 현재의 보호관찰통합시스템을 노트북 컴퓨터에 탑재하고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있는 서버(Server)에 접속함으로써 대상자 관련 각종 정보의 조회 및 입력기능을 기본으로 한다.

본 시스템의 효과로는 가정·직장 등에 대한 수시 방문으로 재범가능성을 억제하고,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등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움직이는 사무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상시 현장 근무로 보다 많은 대상자와의 접촉이 가능하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시스템은 서울보호관찰소의 사이버보호관찰팀(Cyber Probation Team)에서 Mobile Office & Team Probation이라는 프로젝트로 연구 중에 있으며 2001년 하반기 구축되었다. 그러나 본 시스템의 가동을 위해서는 노트북이 탑재된 순찰차 등 필요장비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나 시급한 것은 무선모뎀을 활용할 수 있는 통신규약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요시하여야 하는 현실상의 어려운 점이 있지만, Mobile Office & Team Probation이야말로 부족한 보호관찰 인력으로써 다수의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가장 효과적인 대체 방안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따라서 이의 성공적인 기반구축 및 전국적 실시를 위해서는 위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다.

(4) 社會資源의 圓滑한 活用

유용한 사회자원의 활용은 보호관찰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거주 지역을 바탕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그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사회자원을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느냐가 보호관찰실효성 확보의 관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오랜 경험을 통하여 보호관찰에 있어서는 도랑을 파는 인부로부터 대학교 교수(from ditchdiggers to college professors)까지 각계각층의 적재적소 활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우리나라도 사회내에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감독·원호하고 있으므로 이에 예외일 수는 없다. 다양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하는 데는 다양한 계층의 인적 자원이 필요하며 원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적 자원도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보호관

찰전반에 걸쳐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사회자원은 보호관찰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최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경찰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방지나 지역사회수준에서 범죄를 예방하려면 단순히 어느 한 기관만이 담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 공공부문 기관들 간의 파트너십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과 자원을 넘나들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청소년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주목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경찰과 보호관찰의 협력 및 공조영역을 보호관찰기관의 주용 업무인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에 대한 경찰의 업무지원으로 확대해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분야 이외에도 다른 여러 분야로 확대 적용시킬 수 있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영역증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⁴⁶⁾ 보호관찰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보호관찰관의 개별상담자 이상으로 ‘사회 자원 활용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위원 등 사회내 자원과 연계하여 함으로써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성이 의심받는 이유 중 중요한 것이 보호관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율이 낮은 것은 보호관찰의 효과가 아니라 재범가능성이 없어서 보호관찰조차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필요이상으로 보호관찰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충분한 수의 보호관찰관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보호관찰관은 개별 상담자 보다는 사회자원의 활용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04년 자원봉사자들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수가 17,375명으로 보합추세에 있지만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을 잘 활용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방면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지닌 자원봉사활동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직원이 자신의 담당했던 업무 이외에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면, 보호관찰업무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거나, 나아가 자원봉사관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된다.

셋째, 자원봉사자와 연계된 활동으로 멘토프로그램(mentor program)은 매우 유용하

46) 이승호, “우리나라 사회내처우의 역사적 전개와 향후발전 방향”. 「형사정책연구」 제8호, 한국형사정책연구, 1996, 128면.

다고 생각된다.⁴⁷⁾ 멘토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이면 조력자(helper)인 멘터(mentor)와 조력을 받아야 할 비행자인 멘티(mentee)가 일정기간 자유롭게 일정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심성순환 등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별 프로그램이다.⁴⁸⁾

우리나라에서는 한양대학교에서 맨 처음 실시된 것인데 한양대학교 대학생이 자원하여 멘터가 되고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비행청소년이 멘티가 되어 1998년 6월부터 2001년 11월말까지 무려 7회에 걸쳐 실시된바 있었다. 한양대학교에서 4년간 7기에 걸쳐 실시된 멘터 프로그램은 주로 1:1 의 만남에서부터 복지시설방문봉사, 체육활동, 계절에 따라 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 및 등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행사했다. 이러한 멘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행청소년은 7회에 걸쳐 173명이었으며 대학생 자원봉사인 멘터는 181명으로 오히려 멘터인 조력자가 멘티보다 더 많아 특성에 맞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멘터 프로그램을 보호관찰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범죄자의 사회내처우에 부합하는 하나의 유용한 기법이 될 것이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보다 큰 보호관찰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⁴⁹⁾

47) 오영근,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호」, 통권14호, 법무부, 2002, 22면.

48) 김준호·노성호·이성식·곽대경·이동원·박철현, 전개서, 2006, 516면.

49) 멘터 프로그램은 한양대학교에서 처음 시도된 비행청소년 지도 프로그램으로서 비행예 방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점차 다른 자원봉사 단체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에서 7회에 걸쳐 실시한 멘터프로그램의 평가서를 참고하였다.

제5장 結 論

정부는 소년 대책의 목표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데 두고 소년의 올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의 확립, 소년의 능력개발과 심신단속 그리고 청소년 선도의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제반시책을 펴가는데 있다.” 고 한 바, 필자는 청소년범죄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만이 적합한 처방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원인분석이 그 대책마련으로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은 청소년 범행 내지 범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의 이론을 전개하였으며, 사회지향이론으로는 미국 서더랜드(E.Sutherland)의 차별적 연합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을 비롯한 다른 학자들의 중립화이론, 통제이론, 대쇄이론 등이 있으며 사회반응이론으로 낙인이론, 갈등이론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이론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 학자뿐 아니라 범 국가시책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 범죄가 미래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이란 그 국가의 정치권력이나 정치현실보다는 경제와 함께 국민의 안전감에 관한 정책이 시행되는 국가라 할 것이다. 한 나라가 민주주의적이고 정치와 경제가 성숙될수록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이 삶의 안정감일 것이다. 이러한 안정감을 위해서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범죄의 문제이다. 청소년범죄는 장차 성인이 되어 재범으로의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에 모든 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 하겠다.

앞으로의 형사정책방향에서 세계적인 추세는 교정에 의한 시설내처우보다 보호관찰에 의한 사회내처우 쪽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범죄로부터 사회방위를 위한 범죄인의 처우는 영구격리 시키는 방법 외에는 불가피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종귀착지인 사회 내에서의 재범예방대책이 가장효과 적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범죄인을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제도를 형사정책의 핵심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보호관찰제도를 법제도로 도입하여 시행한지 17년이 경과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실험되어지고 있

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및 프로그램도 다양화되면서 정착단계에 있다. 이처럼 사회내처우의 도입은 범죄인 처우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에 종사하는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보호관찰기관의 조직이나 업무의 독립성도 아직 충분히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기본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다른 여러 제도의 시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선진기법의 도입과정에서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부작용들이 산재해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사회내처우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각국에서 시행 중인 보호관찰제도는 시설내처우의 여러 폐단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재정비용을 절감, 범죄인의 낙인화 방지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범방지와 범죄자 처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듯 많은 장점을 지닌 보호관찰제도를 범죄인 처우에 적극 활용한다면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앞장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들을 정리하면서 본 논문을 마치려한다.

상기한 바 있듯이 외국에서 청소년비행의 원인이나 특성을 조사한 것을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1969년 미국의 슈나이더(H.J.Schneider)에 따르면 ① 학교중퇴, ② 근로가정의 자녀, ③ 실업청소년, ④ 정서교육의 부족, ⑤ 어려운 가정의 자녀, ⑥ 학교, 교사, 형제들을 부정, ⑦ 어린 시절의 두뇌개발 장애, ⑧ 어머니의 직장생활 등을 범죄의 원인과 특성으로 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자 중에는 소년범죄의 원인을 사회화 과정에서 자기억제, 통제 및 금지가 잘 형성되지 못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자기억제와 비행, 범죄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필자의 경우는 소년범죄의 원인이 대개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매체문화의 많은 자극제적인 요소와 무절제한 욕구, 가족 간의 신뢰결여와 보호기능약화, 학교생활의 부적응에 따른 학교교육 중단, 세상을 쉽게 살고자 하는 욕망과 더불어 사회의 구조적인 악성과도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의 급변과 기계화, 교통의 혼잡, 자연오염 등의 사회구조 파장에서 오는 청소년의 갈등, 가치관의 혼란 등을 가져오고 나아가 인간생활의 기본이라 할 공동체의식과 정서생활의 불안을 초래케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소년범죄의 원인과 특성이 다양하므로 그 대책과 기법

도 다각적으로 조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보호관찰제도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도 살펴보았다.

「형벌 본래의 의의는 부상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고통은 이에 수반되지 만 그 고통은 부상자에게 반드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솔로비오프(Solovyof)의 말처럼, 필자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청소년의 궁극적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의 개정을 통한 강력한 입법적 조치와 청소년들이 책임부여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집중보호관찰제도의 확대실시와 정부차원의 복지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보호관찰제도의 목표는 보호관찰법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범죄인의 재범방지(Defence of Recriminal)를 통한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적절한 규모와 활동을 강화하고, cyber시대에 맞는 사법복지적 보호관찰제도의 사학적 운영방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보호관찰만을 명하고 있을 뿐 보호관찰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시설의 설치·운영(정신과 치료)에 대한 내용과 치료전문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가해자 및 피해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과 치료전문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는 한편 미혼모를 관리 보호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복지정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성적이 불량한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비추어볼 때 간섭이나 통제를 받기 싫은 이유로 가정을 등지고 나오는 경우라든가 아예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도 많다. 이들에게 안식을 주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만, 아직 까지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시설이 태부족인데 어차피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이 복지국가라면 수용과 편의도모가 가능한 복지시설을 확대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사범의 97%가 현재 치료시설이 없는 교도소에 방치되어 재활과 예방이 미약하여 재범의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들은 인내심이나 의지가 약한 성격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약물의 유혹에 쉽게 빠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재범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 중에서도 가퇴원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재범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 중에 범행의 횟수가 많은 자들을 대상으로 화상감독시스템을 통한 집중보호관찰을 실시함은 물론, 스웨덴과 같이 의료시설을 갖추어 양질의 마약을 주사하여 약으로 피폐해진 것을 정서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정부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범죄인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고려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본다.

둘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도덕 이상의 법교육 보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살인, 강도, 조직폭력, 국회의원의 뇌물 수수 사건, 무질서한 교통문제, 환경문제, 더 나아가 청소년범죄의 증가 등의 제반 사건들을 볼 때, 우리 국민의 법의식과 법생활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어쩌면 민주주의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죄를 지으면, 사회규범에 어긋난 행동에 대한 처벌이 가해진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어떤 행동이 죄가 되며, 자신의 행동이 무슨 법에 저촉되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폭력, 강도, 절도를 비롯하여 성범죄, 마약으로 까지 이어져 성인범죄를 능가할 정도의 흉폭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청소년의 법의식 및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은 성인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여 법대로 살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법교육 이외에는 법의식과 법체계에 대한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법적 사고능력을 심어 주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법문화의 형성과 법의식 수준의 향상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법교육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학교의 법관련 교육이 비행 및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연구도 발표된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교육학의 보편화가 확립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셋째 올바른 가정확립을 위한 법과 제도적인 장비로서의 현실에 맞는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정상적인 가족형태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이혼가정, 미혼모 가정, 재혼가정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고 이러한 가족 실태에 맞는 가정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출현은 오히려 기존의 불평등한 가족관계와 가부장

적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갈등요소를 가진 가족의 해체형태로 표출되었을 뿐이다. 가정의 해체를 비정상적인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민주적 가치를 지닌 가족의 등장으로 보는 가치관의 대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법적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면접교섭권의 확실한 보장을 통해 이혼 후에도 자녀들과 자유롭게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임은 물론,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가정에 대한 상담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거 안정과 학비와 생활비 지원 등 경제적 구호체제를 마련하여 경제적, 정서적, 심리적 안정 속에서 올바른 가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정·보호청의 신설문제를 들 수 있겠다. 보호관찰기구가 교정·보호청의 조직 내에서 양립기구 내지 정립기구의 독립한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기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보호관찰행정의 정책을 형성하고 재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석방 심사의 일원화와 과학적 분류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성인가석방과 취소의 경우 그 허가 심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그 취소 심사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심사체계에 혼란이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적인 기구 설치로 인해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의 통일성이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므로 출소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재범위험성이 등에 대한 객관적·종합적 판단이 곤란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석방의 심사의 일원화는 이루어져야 하며, 재범예측도구표에 의한 새로운 과학적 분류기준이 마련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이 경중에 대한 과학적 분류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밀착된 보호관찰활동을 전개하는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처우를 실시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國內文獻

1. 單行本

박상기 외,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 소년·비송」, 2000.

이재상, 「사회보호법론」, 경문사, 1981.

이태언·신석환, 「신보호관찰론」, 학현사, 2005.

정주영, 「보호관찰법론」, 해양문화사, 2000.

청소년백서, 2005.

한국교정학회지 1995년 5월호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한국일보, 2006. 11. 09

2. 研究論文

김준호·노성호·이성식·곽대경·이동원·박철현, 「청소년 비행론」, 청목출판사, 2006.

김양곤·이수정·이민식,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김일수, “보호관찰의 발전방양”, 「보호관찰」 제4호, 2004.

민건식, “각국 보호관찰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해외파견검사연구논문집」 제3집, 법무부, 1981.

백찬수, “소년 보호관찰 제도가 소년범죄에 미친 영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오영근,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호」, 통권14호, 법무부, 2002.

- 이성철, “가퇴원전 보호관찰 집행 및 처우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이성철,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승호, “우리나라 사회내처우의 역사적 전개와 향후발전 방향”. 「형사정책연구」 제8호, 한국형사정책연구, 1996.
- 이재신, “보호관찰의 대상자와 기구에 관한 연구”, 「청소년범죄연구」 제6집, 법무부, 1988.
- 이현희, “미국의 밀착보호관찰 프로그램”, 「보호관찰제도의 회고와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장규원, “보호관찰의 이념과 모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3호, 1997.
- 진계호,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 제3권,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3.
- 홍정원, “성인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원호 등 보호관찰기법에 관한 연구”, 「법무연구」 제25호, 법무연수원, 1998.

▣ 外國文獻

- 菊田幸一, 保護觀察の理論, 有信堂, 1969.
- Howard Abadinsky, 문선화, 김영호, 이경남, 장수한 역, 「보호관찰제도와 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
- Lynn Zeller Barelay, Social Services in Probation under a Justice as Fairness Model Change A Juvenile Justice Quarterly, Sept., 1983.
- Dean J. Champion, “Professor of Criminal Justice Department of Social Science”, Texas A&M International University, 「보호」, 법무부보호국, 통권13호, 2001.